

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공무직근로자(연구원 라급)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공무직근로자(연구원 라급)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27일

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장

□ 최종합격자 명단

직종	채용분야	응시번호	휴대전화 뒷자리 번호
공무직	연구원 라급 (고고학)	라급-05	4825

□ 임용일

○ 임용일: 2024. 10. 7.(월)

*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

□ 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○ 제출기간 및 방법: 2024. 10. 4.(금), 18시까지(직접 또는 우편제출)

- 주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, 국립고궁박물관 별관

○ 제출서류 목록

- ① 주민등록등·초본 1부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군경력 포함)
- ② 채용 신체검사서 1부(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확인서)
- ③ 기본증명서 1부(상세)
- ④ 반명함 사진(3x4) 이미지 파일(jpg)
- ⑤ 통장사본 1부(급여지급용 계좌)
- ⑥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((붙임 1) 참조)
- ⑦ 국가유산청 공정채용 확인서 1부((붙임 2) 참조)

⑧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1부([붙임 3] 참조)

⑨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([붙임 4] 참조)

□ 공지사항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,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등의 경우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채용담당자(02-739-692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
2. 국가유산청 공정채용 확인서 1부
3. 부패방지권의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1부
4.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. 끝.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<p>1.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2. 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‘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24 년 월 일

생년월일 . . .

지 원 자

(서명)

[붙임 4]

■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8호 서식]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	채용방법 경쟁 채용	제한 채용직위(직급) 연구원 라급
	채용사유 결원에 따른 신규채용		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①에서 “예”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	[] 예 [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4 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① “가족채용”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